

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63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
2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5년 6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」는 난임, 유산·사산 및 임신출산,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

나. '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
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하여
'24년 9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'25년 12월 31일자로
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

다.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
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
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에
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사무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
기준 등) 제①항 2호(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), 3호 (특수한 전
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) 및 같은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, 정서적 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수탁 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

다. 위탁사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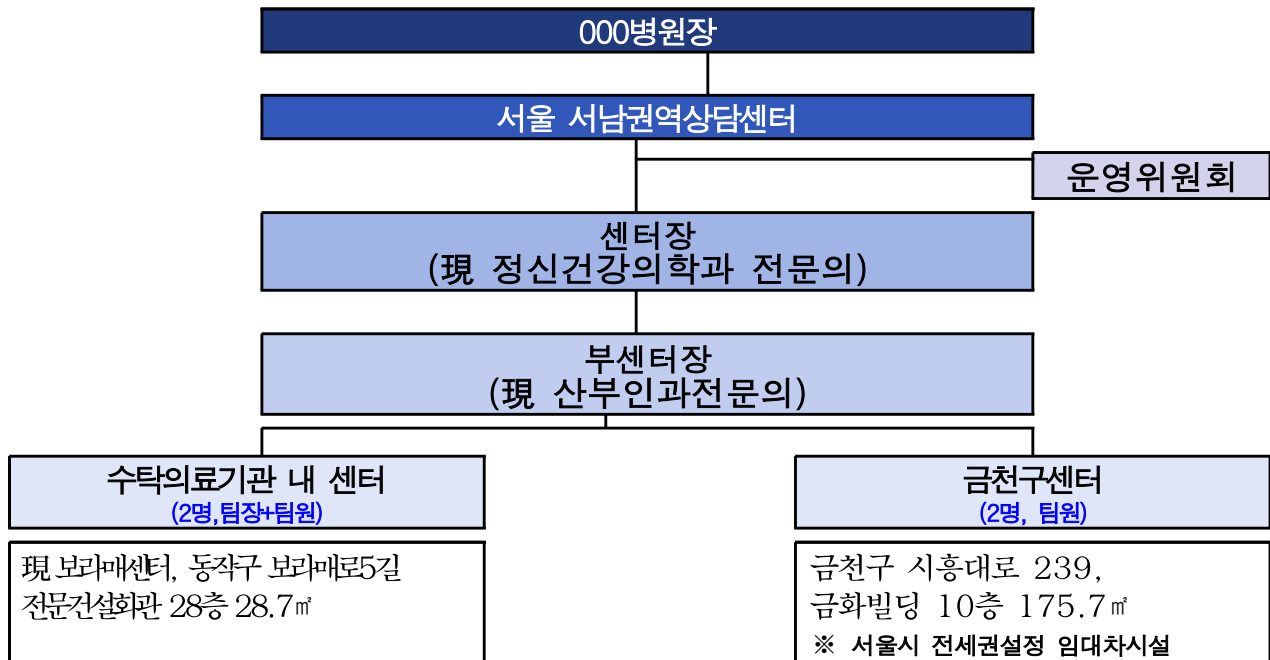
-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(자산)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
- 난임·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
- 방문자 상담,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자조모임 운영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
-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
- 권역별 난임 여성·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
- 전담 인력 채용, 교육,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
-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
-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
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마. 위탁시설 개요(시설명, 조직, 소재지, 규모, 주요시설, 위치도)

- 시설명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
- 조직도 및 정·현원 : 1개 권역 2개센터(센터장/부센터장, 팀장의 팀원3명)


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상담실, 민원대기실, 사무실 등

- 위치도

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-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4(상담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·선정

사. 소요예산 : 325백만원

- 민간위탁금 : 325백만원(국비 50% 130, 시비 50% 130, 자체시비 65)
 - ※ 금천구센터 임차료 및 임차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: 부서예산 편성(35백만원)
 - ※ '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
- 산출근거 : 인건비246,127천원, 운영비 57,741천원, 사업비 등 21,132천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

모자보건법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(이하 “권역별 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
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3.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2. 유산·사산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사무의 위탁)

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5.5.6.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(신규위탁)

- 2025.5.13.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5. 제3차)

○ 향후계획

- 2025.6.: 시의회 동의

- 2025.8.~12.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(☎ 2133-9492)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동의(안)의 제출 경위

- 동 ‘**서남권역**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(안)’은 ‘보라매병원’과 ‘보조금 사업’으로 추진하던 기존 ‘**보조금 사업 협약**’의 만료 시기가 ‘25년 12월 31일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, 향후 동 센터를 ‘보조금 사업’이 아닌 ‘**민간 위탁 사업**’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되었음.

※ 서울시는 기존 ‘서울권역’ 센터의 ‘사업 수요 포화’를 해소하고자, 난임 및 난임 시술 인구가 가장 많은 ‘**서남권역**’에 추가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음.

- [보조금 사업 협약]: ‘24. 7. 5. ~ ‘25. 12. 31. (보라매 병원)
-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동 센터의 사업 ‘예산 형식’을 관련 「모자보건법령」과 「보건복지부 사업 안내」 및 타 지자체 사례와 다르게 ‘**민간 위탁금**’이 아닌 ‘**민간 경상 보조금**’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였음.
- 그러나, ‘예산 형식’ 외 실질적인 ‘**센터 운영**’은 「모자보건법령」과 「보건복지부 사업 안내」에 따라, 그리고 ‘서울시의 기관 모집 공고문’에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고한 바와 같이, ‘**위탁 체계**’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. 즉, 예산 형식은 ‘**보조금**’으로, 실질 운영은 ‘**위탁**’ 형식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한 것이라 판단됨.
- 그리고 이러한 ‘보조금 예산 형식’에 관해, 지난 ‘23년 6월 경 ‘서울시 법률지원 담당관’에서는 아래와 같이 “동 센터의 사무는 관련 ‘모자보건법령’상, ‘민간 위탁 사무’로 봄이 상당하다”고 자문한 바 있으며, “향후 동 사무를 계속 추진할 시, ‘민간 위탁 사무’로 추진할 것을 권고”한 바 있음.

〈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권고(‘23.5.19.)〉

모자보건법 제11조의4 제2항,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·운영 사무는 서울시 사무로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 봄이 상당함. 본 협약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권고

- 그리고 이에 서울시는 이번 제331회 정례회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라 한다)」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, 동 사무를 ‘민간 위탁 사무’로 전환하는 ‘신규 민간 위탁 동의’를 받고자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	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	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7.30., 2012.12.31., 2014.5.14., 2025.1.3.>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,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	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., 2021.12.30.>

2 신규 민간위탁 개요

- 기존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· 운영 (보조금 사업) 현황
 - '24.2월 : 보건복지부 권역 난임·우울증상담센터 운영 기관 공모 선정
 - '24.2월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우울증상담센터 운영 기관 공모
 - '24.4월 : 보건복지부 권역 난임·우울증상담센터 공모에 최종 선정
 - '24.7월 : 보라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('24.7.5.~'25.12.31.)
 - '24.8월 : 서울 서남권역 금천구 상담센터 추가설치 선정 및 임대차 계약 (시흥대로 239) ('24.9.1.~'25.12.31.)
 - '24.9월 : 서울권역 난임·우울증 상담센터 개소식('24.9.27.)

구 분	위탁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	비고
지방보조사업	1년 6개월 ('24.7.5.~'25.12.31.)	보라매병원	공모·선정	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선정

구 분	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 심리상담센터	
위 치	보라매 상담센터 (신대방동 보라매로 5길, 전문건설회회관 28층)	금천구 상담센터 (시행대로 239, 금화빌딩)
시설규모 및 임대현황	· 면적 : 28.7㎡ · 상담실, 사무실	· 면적 : 175.7㎡ · 상담실3, 집단상담실, 대기공간, 서고(창고)
	· 병원 자체 임대시설 사용	· 서울시 전세권 설정 임차시설
운 영 인 력	센터장 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), 부센터장 (산부인과 전문의)	
	· 사회복지사(팀장) · 임상심리사 1명	·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 · 간호사 1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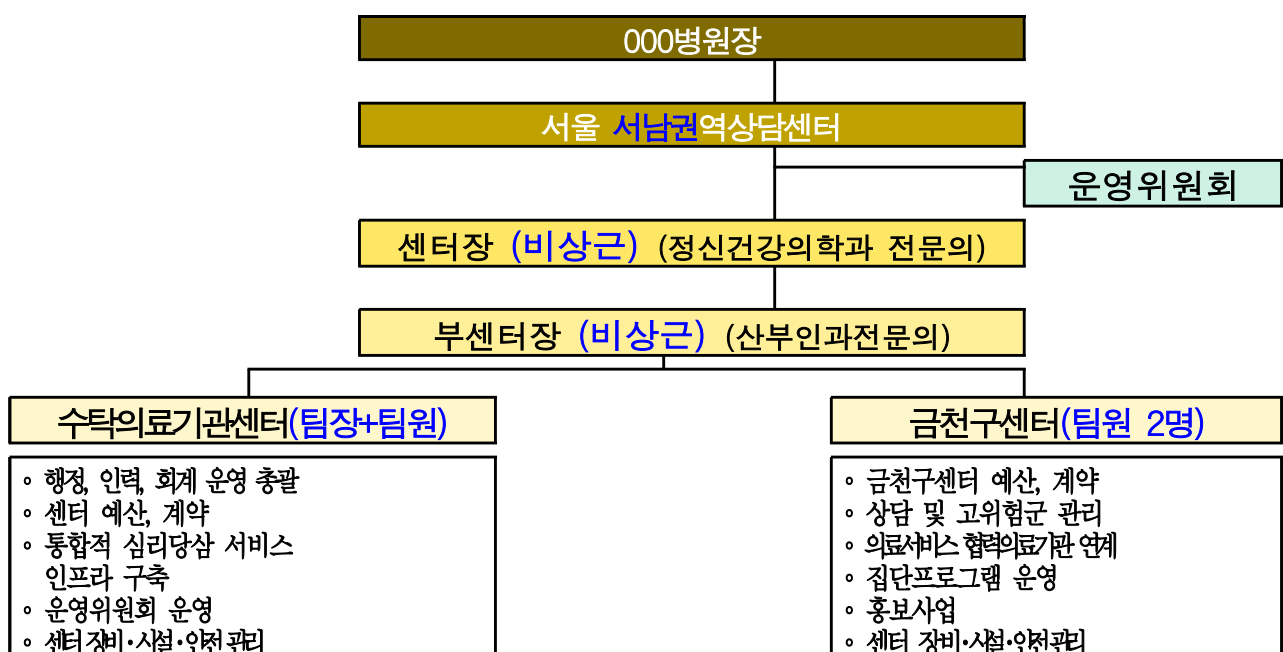
○ 신규 민간 위탁 개요

- 사 무 명 : 서울 **서남권역**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(보라매센터, 금천구센터)
- 위탁유형 : 시설형 (신규) ※ 서울시 전세권설정 임대차 시설
- 위탁기간 (예정) : 민간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('26.1.1.~'28.12.31.)
- 소요예산 ('26년 예정) : 325,000천원(민간위탁금)

※ 자체 시비: 인건비 약 55,397천원, 그 외 사업비 약9,602천원

구분	계	국비(50%)*	시비(50%)	자체시비
서울서남권역 상담센터	325,000	130,000	130,000	65,000
총계	325,000	130,000	130,000	65,000

- 종사인력: 센터장(1), 부센터장(1), 팀장(1), 팀원(3)



○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**적정**

부서명	위탁사무명	유 형		現 수탁 법인	위탁예정 기간	심의 결과
시민건강국 (건강관리과)	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 터 관리 및 운영	시설형	신규	-	3년 이내 (26.1.1.~28.12.31.)	적정

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

- ‘서울특별시장’이 민간에 신규 위탁 (공모)하고자 하는 “서울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”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○ 구체적인 위탁사무

-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(자산)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
- 난임·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
- 방문자 상담,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자조모임 운영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
-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
- 권역별 난임 여성·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
- 전담 인력 채용, 교육,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
-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
-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

- 우선, 동 ‘서울권역 난임 · 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’ 사무의 성격은 「모자보건법」제11조의4 및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산전 · 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, 난임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등을 위한 상담 ·심리평가 ·교육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.

- 특히, “동 센터”의 주된 사무가 ‘난임부부, 임신부’ 등을 대상으로 ‘우울 및 심리 평가 및 심리 상담’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, ‘서비스 대상’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**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**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**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**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시립병원, **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**

- 이에 더해, “동 권역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”는 「모자보건법」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‘서울특별시시장’의 사무이며, 서울특별시장은 동 법 제11조의4제3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‘전문적인 법인’에게 ‘동 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’를 ‘위탁’할 수 있음.

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② **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(이하 “권역별 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**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「모자보건법」 시행규칙 제12조의4(상담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

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2. 9.>

1.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
2. 그 밖에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

- 동 ‘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’ 사무의 성격은 산전·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, 난임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등을 위한 상담·심리평가·교육 등 특수한 전문지식과 고도의 기술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임. 따라서, ‘난임, 산후 우울증 등과 관련한 의료 전문성 및 상담 전문성’을 고루 갖추고 있는 ‘법인’에게 ‘민간 위탁’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무라 판단됨.
- 아울러, 「동 권역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」를 ‘민간’에 ‘위탁’하는 법적 근거는 「모자보건법」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과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.
- 다만, 지난 동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동 센터의 사업 ‘예산 형식’을 관련 「모자보건법령」과 「보건복지부 사업 안내」 및 타 지자체 사례와 다르게 ‘민간위탁금’이 아닌 ‘민간 경상 보조금’으로 편성하고 ‘보조금 협약 방식’으로 운영하였음.
- 그러나, ‘예산’ 외의 다른 실질적인 ‘운영’은 ‘민간위탁’ 형태로 운영하였음. 따라서, 향후 동 센터를 신규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 「모자보건법령」과 「보건복지부 사업 안내」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2863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」는 난임, 유산·사산 및 임신·출산,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
- 나. '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'24년 9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'2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
- 다.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사무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제①항2호(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), 3호(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)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,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, 정서적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

다. 위탁사무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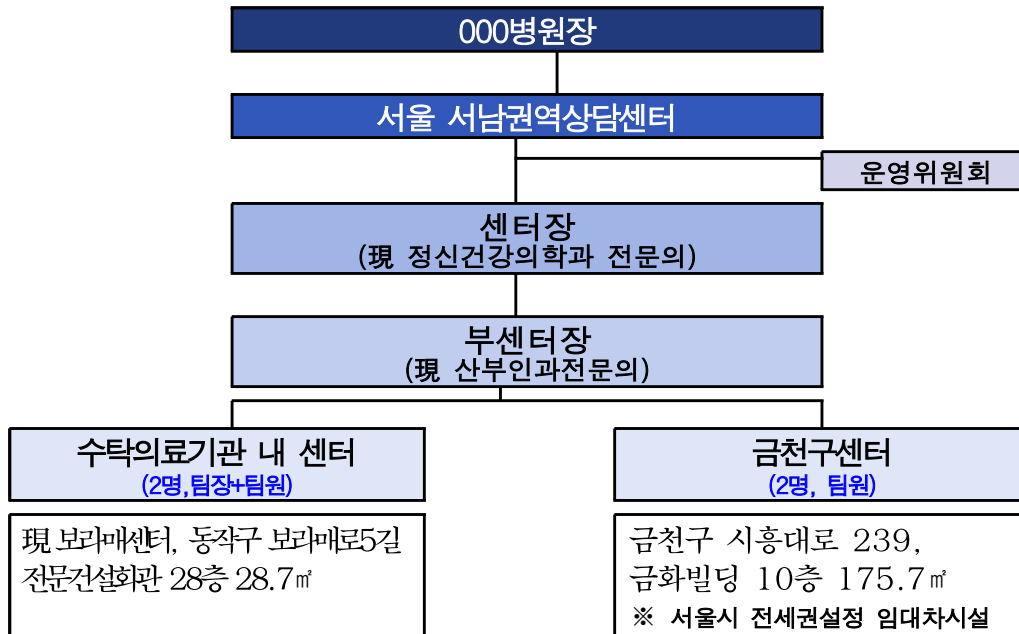
-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(자산)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
- 난임·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
- 방문자 상담,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자조모임 운영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
-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
- 권역별 난임 여성·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
- 전담 인력 채용, 교육,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
-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
-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
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마. 위탁시설 개요(시설명, 조직, 소재지, 규모, 주요시설, 위치도)

○ 시설명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
○ 조직도 및 정·현원 : 1개 권역 2개센터(센터장/부센터장, 팀장의 팀원3명)



○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상담실, 민원대기실, 사무실 등

○ 위치도

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-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2조의4(상담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·선정

사. 소요예산 : 325백만원

- 민간위탁금 : 325백만원(국비 50% 130, 시비 50% 130, 자체시비 65)
 - ※ 금천구센터 임차료 및 임차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: 부서예산 편성(35백만원)
 - ※ '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
- 산출근거 : 인건비246,127천원, 운영비 57,741천원, 사업비 등 21,132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

모자보건법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(이하 “권역별 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
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3.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
② 시장은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2. 유산·사산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사무의 위탁)

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5.5.6.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(신규위탁)
- 2025.5.13.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5. 제3차)

○ 향후계획

- 2025.6.: 시의회 동의
- 2025.8.~12.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(☎ 2133-9492)